



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,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.

Chubb 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 사업방법서 별지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-기타/비용

2. 보험종목의 명칭 : Chubb 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

3. 보험의 목적

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

4.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

- 1) 보험기간 :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2) 보험료 납입주기 :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.

5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
6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「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7. 기타

- 1) 이 보험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피보험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
- 2) 이 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가입자(가입예정자 포함)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
- 3)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50만원 이하로 운영함
- 4)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의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
 - ① 다수구매자(피보험자)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보장내용*으로 판매
 - * 불완전판매우려가 적고 보험사고 입증 및 보험금 지급절차가 단순한 담보 (예)상해사망)
 - ② 보험료는 계약자(상품판매자)가 전액 부담*
 - * 보험료 부담이 피보험자에게 전가되지 않음을 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경우 인수
 - ③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주요 보장내용을 설명하고 피보험자 확인*를 받은 경우 인수
 - * 가입전설명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입후 설명 및 확인
- 5)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
 - (1)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 - ①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
- ②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「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
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
(2) 기타

- ①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.
-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
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.

Chubb. Insured.SM